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,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경품 관련 규정 개선(안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)

- 1)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확대
- 2) 정품 사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 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

나. 일부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도입(안 별표1 제2호)

- 1)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
- 2) 기타,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 관련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,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,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

다.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(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)

- 1)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교육에 참석”을 “교육을 이수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나. 문화상품류,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. 다만,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, 선정성·사행성·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,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법 제39조”를 “위원회 및 법 제3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협회”를 “위원회, 협회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 중 “30일”을 “15일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20대”를 “5대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5곳”을 “2곳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무상”을 “유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)	제7조(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)	제7조(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)	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<u>교육에 참석</u> 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을 이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을 이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		
제16조의2(경품의 종류 등)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	제16조의2(경품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6조의2(경품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경품의 종류	1. -----	1. -----		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	가. (현행과 같음)		
나. <u>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.</u> 다만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.	나. <u>문화상품류,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.</u> 다만,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, 선정성·사행성·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,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.	나. <u>문화상품류,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.</u> 다만,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, 선정성·사행성·폭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,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.		

현행	개정안
2.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 가격(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 가격을 말한다) <u>5천원</u> 이내의 것으로 한다 3. (생략) 제23조(권한의 위탁 등) ①·② (생략)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 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<u>법 제39조</u>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<u>협회</u> 또는 단체의 명칭 · 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 [별표1]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(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) 1.(생략) 2. 아케이드게임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	2. 경품의 지급기준 ----- ----- ----- <u>1만원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권한의 위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위원회 및 법 제39조</u>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위원회, 협회</u> ----- -----. [별표1]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(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아케이드게임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가. 시험실시기간은 <u>30일</u> 이내로 할 것 나.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<u>20대</u> 이내로 할 것 다.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는 <u>5곳</u> 이내로 할 것 라.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마.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바.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	가. 시험실시기간은 <u>15일</u> 이내로 할 것 나.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<u>5대</u> 이내로 할 것 다.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는 <u>2곳</u> 이내로 할 것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게임이용요금은 <u>유상</u> 으로 할 것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46